

발간 등록 번호
진흥원-2022-920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Contents

1	어린이집 설치·운영 (15문항)	7	4	재무·회계규칙 (19문항)	43
2	보육교직원 (12문항)	21	5	CCTV 설치·운영 (13문항)	57
3	급식·위생·안전 (10문항)	33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2 사례로 본 알기 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관련한 질의, 상담 및 점검 사례 중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일부 수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총 5개 분야, 6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 등을 토대로 어린이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령과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각 사례별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는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사항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1

어린이집 설치·운영

어린이집 설치·운영

Q.1

어린이집 유희 보육실을 보육실 외 보육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가 대상인가요?

유희 보육실을 공동놀이실로 용도를 변경하고 정보공시에 반영하지 않음.

A

어린이집 운영자가 기존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어린이집의 대표자, 종류, 명칭,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희 보육실 용도 변경으로 보육실 면적 총합이 감소해도 기존 정원 유지가 가능할 경우,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변경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변경된 내부 시설 현황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자의 시설현황 정보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내부시설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49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7

Q.2

어린이집 건물의 지하 1층에 조리실과 식당을 설치해도 되나요?

어린이집 지하 1층에 조리실과 식당시설을 설치함.

A

어린이집 조리실은 지상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 급식소로 신고하였거나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근(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 1층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위 조건 미충족 시 지하층에는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권고

1. 선근*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근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근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선근(Sunken):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안목치수: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0

Q.3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해도 되나요?

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이 아닌 인접한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함.

A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도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어린이집에 인접한 경우 조리실 공동사용은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0

Q.4

4·5층 어린이집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인가요?

기존 3층 건물의 어린이집이 증축하여 총 4층이 되었으나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함.

A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시행일(11. 4. 7.) 이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해당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령 제50호 부칙 제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인가받은 4층 또는 5층인 어린이집이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 등을 3층 이하에만 설치하여 영유아의 보육을 3층 이하에서만 제공하고, 4층과 5층에는 교사실, 조리실 등 영유아 보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속시설만을 설치하며, 보육 용도로 전용되는 3층 이하의 최상층과 바로 그 위층 사이에 영유아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셔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㉔(iii)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형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별표 4],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57

Q.5

인근의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귀속된 놀이터를 대체놀이터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영아용 놀이기구가 미설치된 주변 유치원의 놀이터를 사용 중임.

A

2022년 2월 1일부터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감원 제외) 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 위에 설치된 놀이터가 아닌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귀속된 놀이터는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합니다.

인근놀이터의 인정기준은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실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하며,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되어야 하는 등 보육사업안내에 명시된 인근놀이터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5~48

Q.6

어린이집 내 빈 공간을 임시 주거 용도나 보육 목적 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대표자가 어린이집 내 빈 보육실을 주거시설로 활용함.

A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대표자 등 주거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 등 설치 불가).

다만,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서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1

Q.7

어린이집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건물 내 지역아동센터의 전기 요금을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A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시설)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공간을 분리해야 하며, 아동시설에 비상재해대피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1~42

Q.8 어린이집이 5층 건물인 경우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5층 건물의 어린이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 가진 자도 없음.

A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 4],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57~58

Q.9 비상출구 앞에 이동식 교구장 및 물건을 두어도 되나요?

어린이집 비상출구 앞에 화분 및 이동식 교구장을 적치함.

A 비상시 영유아의 안전한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비상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은 비상출구 앞에 적치할 수 없으며, 비상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50, 부록 p.346

Q.10 어린이집의 집중휴가기간(하절기 등) 운영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임시휴원(방학)을 실시하였으나 긴급보육수요조사를 한 기록이 없음.

A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방학 등)은 불가합니다. 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 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당번 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78

Q.11 어린이집 운영관련 문서는 얼마동안 보존해야 하나요?

운영관련 서류 일부(교직원 관리대장, 봉급대장, 보육일지 등)를 어린이집 내에 보관하고 있지 않음.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구분	보존기간
·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 -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	준영구
·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
·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등 · 영유아 생활기록부	5년
·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3년
·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1년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82~83

Q.12 특별활동을 오전부터 실시해도 되나요?

전일 오후에 진행하지 못한 특별활동을 보충하기 위해 다음날 오전 11시 30분부터 특별활동을 실시함.

A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프로그램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8

Q.13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 인가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변경되었으나 변경 사항을 공시하지 않음.

A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하여야 합니다(월 1회). 정보 공개해야 하는 특별활동 관련 사항은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연령,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등이며, 공시한 항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5],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8, 157

Q.14

어린이집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실시현황도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공시해야 하나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미공시함.

A

어린이집은 총 7개 항목 18개 범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5]에서 정한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보유관리정보를 공시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학버스 운영 여부, 신고 현황, 통학버스
승차 인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를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인 어린이집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와
이수 날짜를 공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5],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56~158

Q.15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0명 중 학부모 위원은 3명이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5월, 11월 2회만
개최함.

A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협동어린이집 제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학부모 대표는 최대한 영유아
연령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영유아 수(현원기준)가 100인 미만 어린이집: 5인 이상 10인 이내, 100인 이상 어린이집: 11인 이상
15인 이내

「영유아보육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43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2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Q.1 원장의 근무 공백이 15일 이상 지속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의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날이 15일이 지났는데 보육교사가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음.

A 어린이집 원장(교사겸직원장 포함)이 휴가, 병가, 보수교육 참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연속, 휴일 제외) 이내이며, 실제 대행 시작 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교사겸직원장이 1일 이상 담임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공백 방지를 위해 담당 반에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8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14

Q.2 A어린이집 원장이 B유치원 원장을 겸임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유치원 원장도 겸임하여 운영함.

A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예) A어린이집의 원장은 B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예) A어린이집의 원장은 B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15

Q.3

어린이집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호봉산정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어린이집 사무원이 동일 어린이집에서 2019년 3~8월까지 사무원으로 6개월 근무하고 9월 보육교사로 직종을 변경하였으나, 호봉산정 시 제외됨.

A

사무원의 호봉인정 경력은 '20. 1. 1.을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20. 1. 1. 이전의 호봉인정 기준은 동일 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가 호봉으로 인정됩니다(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으로 인정 불가). '20. 1. 1. 이후 호봉인정 기준은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원장 및 보육교사로 직종 변경 시,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원장 및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2019년에 사무원이 보육교사로 직종을 변경하였기에 호봉의 50%를 호봉산정 경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 기존 인정되던 호봉은 계속 인정, '20. 1. 1.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 적용

「영유아보육법」제19조의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04

Q.4

A어린이집 교사가 B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업무시간 중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함.

A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나, 보조교사, 야간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합니다.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를 첨부하여 관리하며 업무 외의 외출 시에는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휴게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7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15

Q.5

동일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하나로 작성해도 되나요?

동일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하고 있는데 보조교사 근로계약서만 작성함.

A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조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보조교사가 동일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가 필요하나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일괄로 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하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은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71

Q.6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간호사를 겸임할 수 있나요?

현원이 120명인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를 겸임하고 있음.

A

영유아 100인 이상(현원기준)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 간호사 또는 영양사 겸임 가능하며, 간호사, 영양사 동시 겸임은 불가합니다.

*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영유아보육법」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10, 214

Q.7

보육교직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호봉으로 인정이 안 되나요?

담임교사가 출산 후 60일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호봉획정 시 출산전후 휴가 기간이 경력 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음.

A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90일 이내(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보육교직원의 휴직 시에도 호봉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①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1인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 ②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90일 이내의 가족 돌봄 휴직기간, ③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업무상 재해로 인한 1년 이내의 휴직기간도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4조,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06

Q.8 장기 미종사자 교육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어린이집에 채용된 담임교사가 임용 전 3년간 보육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없음에도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음.

A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4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집합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3조,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31

Q.9 보육교직원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조기퇴근해도 되나요?

담임교사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함.

A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에 따라서 사용자(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수당지급으로 대체 할 수 없으며(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6.26.),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 「근로기준법」제54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216

Q.10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미기재 함.

A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근무장소, 근무내용,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

「영유아보육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3], 「근로기준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85

Q.11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모두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하원하는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도 퇴근할 수 있나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오후 6시 30분에 모두 하원하여 연장보육 전담교사도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함.

A

보육수요자의 이용권 보장과 안정적인 연장보육 운영을 위해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연장보육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오후 7시 30분 이전에 모두 하원 하는 경우에도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지원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33조에 따라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연장보육료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 2],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3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411, 474~477

Q.12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담임교사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A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육아종합지원센터러닝(lms.educare.or.kr),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 및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교육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교육내용에는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와 같은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 홍보 자료)를 적극 활용
- ※ 육아종합지원센터러닝(lms.educare.or.kr)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교육에서 제공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등을 활용
-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 등 실시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30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3

급식·위생·안전

급식·위생·안전

Q.1 어린이집 보존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현원이 30명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음.

A 어린이집 원장 등은 「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각 150g이상 보관 권장) 분량을 섭씨 영아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음). 다만,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존식 대상은 제공한 모든 급식 및 간식, 대체 음식 등(기존 음식 소진에 따라 별도 추가 제공되는 음식, 식품 알레르기에 따라 대체 제공되는 음식 등 일체)이며, 보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바른 보존식 보관 방법

- 음식의 종류별로 각각 1인분(각 150g이상 보관 권장)이상 독립 보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로 보관
- 보존일 및 폐기일(날짜, 시간(시/분)), 채취자 성명, 메뉴명을 철저히 기록, 보존식 용기에 부착하여 보관
- 영하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 스테인리스 재질로 각각의 뚜껑이 있는 전용용기 또는 1회용 멸균 팩에 보관
- 세척소독 → 보관함 상단 보관 → 음식 담기 직전 소독·건조 사용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8], 「식품위생법」 제88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14

Q.2 식자재 및 조리음식 보관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어린이집 조리실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보관되어 있고, 전날 조리 된 음식을 보육교직원용으로 보관함.

A 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의 원료 또는 제품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8],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13

Q.3 식단표에 식자재의 원산지를 꼭 표기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식자재 원산지가 미기재 된 식단표를 가정에 안내하고 급·간식이 제공됨.

A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호,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13

Q.4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의 급·간식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영유아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음.

A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입소 시 보호자 면담 및 서면(서식 II-6 부모동의 및 조사서 참고) 확인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 알레르기 유발식품, 증상, 대체가능 식품 등을 확인하여 급식·간식 제공 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식품 알레르기 여부 조사 결과,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8],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12, 부록 p.347

Q.5 어린이집 현장학습으로 인해 직접 조리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 없이 현장학습 중 외부음식점에서 주문한 김밥을 제공함.

A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34조). 다만,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급식(외부 음식)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미리 고지·안내해야 합니다. 학부모 동의를 거치고 이를 증빙(보호자가 상기 안내에 동의하여 회신한 알림장, 키즈노트 등) 시에는 외부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음식 제공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외 장소에서 배식하는 경우 배식용 운반기구 및 운송차량 등을 청결히 관리하여 배식 시까지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조리된 식품에 대하여 배식하기 직전 음식의 맛, 온도, 조화(영양적인 균형, 재료의 균형), 이물(異物),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검식을 해야 함.
- 조리된 식품의 온도 관리를 하되, 조리 후 급급적 단시간 내에 배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함.

「영유아보육법」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8],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11~112

Q.6 조리사가 급·간식 조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조리사가 위생복을 입지 않고 영유아에게 급·간식을 조리, 배식함.

A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원(조리사))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 8], 「식품위생법」제3조제1항,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13

Q.7 어린이집에서 소방대피훈련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에서 소방대피훈련을 진행하고, 실시 결과를 정보공시 하지 않음.

A 어린이집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비훈련을 월 1회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5]에서 정한 항목별 변경 주기에 따라 소방대피 훈련여부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비상대응계획: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의6제2항 관련 [별표 1의5],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21~122, 부록 p.225~234

Q.8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이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 없고,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이 부착되지 않음.

A 어린이집 원장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이하 ‘안전운행기록’이라 한다)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53조제7항). 또한, 「교통안전법」제55조 개정사항 시행에 따라 통학차량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21년 1월 시행, 기존차량은 2년 유예 가능). 통학차량 내부에는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II-5>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장치(DTG): 차량 운행에 관련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운전습관에 해당하는 과속, 엔진 과회전, 긴시간 과속 등 운전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도로교통법」제53조제7항, 「교통안전법」제55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21

Q.9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교직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동승하는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A 보육교사 등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등 동승자에게 매 2년 마다 보호자 안전교육(온·오프라인 모두 가능)을 받도록 하고, 수료 여부 확인 및 수료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동승보호자 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도로교통법」제53조의3,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20, 476

Q.10 어린이집 내에서 감염병 발생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내에 장염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음.

A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경우에는 보건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시·군·구 보고 대상 감염병: 수족구병, 풍진,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 장염,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전염성농가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결핵, 성홍열, 기타 감염병

** 보건소 신고 대상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06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4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규칙

Q.1 4대 보험료 산정 시 원장의 직책급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매월 직책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직책급을 제외하고 기본급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산정함.

A 직책급(222목)은 별도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4대 보험, 퇴직금(고용원장의 경우) 등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책급은 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정한 직책급 편성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7

Q.2

어린이집 내부에서 외부업체 주관으로 진행된 체험학습을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내부에서 외부업체 주관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한 후, 행사비(313목)로 회계 처리함.

A

외부업체 주관으로 진행된 체험학습이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회계처리 가능합니다. 기타필요경비(현장학습비(421목))는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이 해당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4

Q.3

영유아의 개인 소모품 구입에 대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학부모에게 영유아의 개인 소모품인 A4용지, 파일, 풀, 가위 등의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물품 구입에 대한 비용을 청구함.

A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모로부터 수납이 불가합니다.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5

Q.4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보육교사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근무기간 1년 미만인 보육교사로 근무한 보육교직원의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음.

A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육교직원이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04

Q.5

어린이집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 보고가 누락되었음.

A

모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보고해야 하며, 협동어린이집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5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9, 143~144, 부록 p.7, 10

Q.6

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이 회계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사무원으로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재무회계)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A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하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 위임에 대한 권한을 소속 보육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 후 수입 및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21조제2항(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관련 [별지] 위임장 서식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1, 33

Q.7

어린이집 업무와 관련된 휴대폰 이용료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몇 대까지 지출 처리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2대의 휴대폰 이용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함.

A

어린이집 회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으로 지출하는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의 경우, 1대에 한해서 이용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회계에서 이용료를 지출하는 휴대폰의 경우 기기를 구매(자산취득 또는 자부담)하여 월 이용료만 납부하도록 하며, 자산취득비(721목)로 휴대폰 구매 시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 상품구매 등 소액결제료를 월 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하는 것은 불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4

Q.8

어린이집 원장의 대학원 등록금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원장의 대학원 등록금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교직원 연수·연구비로 지출함.

A

교직원 연수·연구비(311목)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개인 학위취득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어린이집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교직원 연수·연구비(311목)로 회계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단,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과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합니다.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일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7-58

Q.9

당해 연도에 운영비 부족으로 지급받지 못한 원장 급여를 다음 해에 지출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으로 '21년 12월에 지급하지 못한 원장 급여를 '22년 3월에 기타 운영비목으로 지출 처리함.

A

어린이집 운영비 부족으로 당해 연도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111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년도 지출임을 부기하여 지출처리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2-53

Q.10

보육교직원에게 현금으로 수당 지급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보육교직원 계좌로 생일 축하금 10만원을 이체 후 복리후생비(216목)로 지출 처리함.

A

복리후생비(216목)는 현물 또는 서비스 개념으로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보육교직원에게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제수당은 보육교직원수당(122목)으로 지출 처리해야 하며, 4대 보험,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3

Q.11

원장 겸 대표자인 경우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가요?

민간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퇴직금을 적립함.

A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 시(매년 5월 31일까지) 퇴직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 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103-104

Q.12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보육교직원이 출장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증빙서류 없이 여비(유류대)를 지급받음.

A 보육교직원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을 증빙하면 됩니다. 여비(214목)는 지자체 여비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5

Q.13 어린이집 연간 행사용으로 ZOOM을 사용하는 경우, ZOOM 사용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교사연수 목적으로 ZOOM을 사용하고 ZOOM 사용료를 기타 필요경비(421목)로 지출 처리함.

A 어린이집 부모교육 및 교사 연수를 위해 ZOOM 사용료를 지출한 경우, 공고료,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에 포함되어 수송비 및 수수료(211목)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수송비 및 수수료(211목)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구입약품,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대관·비품대여료 등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53-54

Q.14 특별활동비 지출 후 잔액이 남았을 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특별활동비 수납하여 정산 후 남은 잔액 14%를 운영비로 지출함.

A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은 사·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수납한 내역대로 100% 집행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7, 부록 p.47, 59

Q.15 기타필요경비 지출 후 집행 잔액을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타필요경비를 수납하여 지출 후 잔액 20%를 관리운영비로 지출함.

A 필요경비 수납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반기별로 기타필요경비의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 수납은 불인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6-97

Q.16

당해연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할 수 있나요?

전년도 단기차입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상환함.

A

단기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1회계연도에 한하여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상환되지 못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 세출 예산 단기차입금 상환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61

Q.17

어린이집의 노후 된 시설 공사를 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내부의 노후 된 교실문 및 창문 개·보수를 한 후 해당 비용을 시설비(711목)로 지출함.

A

시설 신·증축 및 부대경비, 그 밖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의 경우 시설비(711목)로 구분합니다. 단, 소방시설이 노후 되거나 수선이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712목)로 구분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21

Q.18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수교육 지원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보수교육 지원금을 인건비 보조금(311목)으로 편성함.

A

보수교육 지원금은 그 밖의 지원금(324목)으로 계정 구분합니다. 이 외에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식·간식비, 냉·난방비, 누리과정 운영비, 시간제보육 운영비, 건강검진비 등이 그 밖의 지원금(324목)에 해당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49

Q.19

부모참여 수업 시 소요되는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보육과정과 연계되는 부모참여 수업(송편 만들기) 시 소요되는 비용을 기타필요 경비(421목)로 지출함.

A

행사비(313목)는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 경비로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단,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부모관련 행사도 행사비(313목)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기타필요경비(421목)는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을 의미하며 이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별표 8],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93~97, 부록 p.58~60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5

CCTV 설치·운영

CCTV 설치·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카메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Q.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동작 감지 기능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영상정보처리기기 녹화 기능을 동작 감지로 설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촬영되지 않고 일부 활동 시간만 촬영됨.

A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 촬영이란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상시녹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동작 감지 기능이 아닌 지속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상시녹화 기능으로 설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4

Q.2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후, 주 출입구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경계부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A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 촬영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은 어린이집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 두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5

Q.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시, 안내판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 출입구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는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데 주변 경계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에는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내용이 없음.

A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은 어린이집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 두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입니다. 여기서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는 어린이집 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수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CCTV 설치안내(예시)	
목적	어린이 안전,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영시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치장소 (촬영범위)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담당자	책임자: ○○어린이집 원장 ○○○(연락처) 운영자: ○○어린이집 원감 ○○○(연락처) 위탁업체: 업체명(연락처)

297mm

210mm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별표 1],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5, 206

Q.4

장기간 어린이집 공사로 인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중지함.

A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중지해야 할 경우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운영에 대한 동의서(「보육사업안내(부록)」의 [별지 제2호])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운영 신고서에 신고내용, 운영 중지 기간 등을 작성 후 부모로부터 받은 사본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76~177, 195~197

Q.5 영상정보처리기의 관리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영상정보처리기 내부 관리계획 내에 영상정보처리기 관리책임자를 ○○○보육교사로 지정함.

A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 설치·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 내부 관리계획 내에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보육교직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인 원장은 영상정보 관리, 열람 접수 및 처리 업무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별표 1의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0

Q.6 영상정보처리기 내부 관리계획 내에 운영담당자를 지정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정보처리기 내부 관리계획 내에 운영담당자를 ‘보육교직원’으로만 기재함.

A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 내부 관리계획을 「보육사업안내(부록)」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계획 내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 운영담당자는 보육교직원 중 특정인으로 지정하여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이름을 작성해야 합니다. 운영담당자의 역할은 영상정보처리기 관련 열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열람 접수 및 처리 업무,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0, 190~191

Q.7 어린이집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어린이집 관리책임자인 원장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운영담당자인 ○○○보육교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A 어린이집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0, 193

Q.8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내에 어린이집 운영담당자를 필수로 지정해야 하나요?

내부 관리계획 내에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운영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A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운영을 위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 내에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지정해야 하며, 운영담당자는 보육교직원 중 지정하거나 관리책임자인 원장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시설 규모 및 설치대수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결정). 관리책임자인 원장은 어린이집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 접수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영상자료의 유출·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표 1의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0, 190~191

Q.9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후, 관련 내용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의 열람 요청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영상정보 열람 후, 관련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음.

A

학부모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절차(「보육사업안내(부록)」 p.183~184 참고)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해야 하며, 열람 후에는 조치사항과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보육사업안내(부록)」의 [별지 제10호])에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방법은 영상정보를 요청한 자(학부모 등)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파일 명칭과 파일 형태,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아동학대, 안전사고 확인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표 1의2],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3~184, 188, 203~204

Q.10

영상정보 자료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열람해도 되나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중인 원장이 어린이집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로 영상자료를 열람함.

A

어린이집 외부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영상정보 열람은 반드시 어린이집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0

Q.11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로그인 암호를 필수로 설정해야 하나요?

원장실 내에 있는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지 않고 운영함.

A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 내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는 반드시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해야 하고, 로그인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1

Q.12 어린이집 내에 영상정보 저장장치 보관시설은 항상 잠가놓아야 하나요?

원장실 내에 있는 영상정보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음.

A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저장장치를 보관하고,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8,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1

Q.13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가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영상 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함.

A 열람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장은 「보육사업안내(부록)」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마스크 처리 등)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헌마994, 20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 2022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부록 p.183~184, 200

2022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2022년 12월 인쇄

2022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전화 1670-2082 팩스 02-6901-0151

디자인·제작 전우용사춘(주) 전화 02-426-4415

사전 승인 없이 본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